

대구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검토과정

- 발의일자 : 2021. 10. 6.
- 발 의 자 : 이주한 의원 외 2명
- 검토일자 : 2021. 10. 8.

2. 근거법령

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7조, 제16조
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
- 「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항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활동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안 제4조)
- 중복지원 금지(안 제5조)
- 지도 및 감독, 지방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안 제7조)
- 포상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의용소방대 활동의 지원범위,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도·감독, 개인 또는 단체 포상 등 의용소방대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- 화재 등 재난발생시 화재진압 및 구조·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.